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5급상당(전문위원)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5급상당(전문위원)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년 11월 18일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직무 분야	채용 직급	채용 인원	담당 예정 직무내용	근 무 예정기관
전문위원	5급상당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보고 및 의사진행 보좌 ○ 자치입법활동, 행정사무감사·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○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의회관련 업무 전반 	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

2. 응시자격

- **공통 응시자격**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및 같은 법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 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 - 지역, 성별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)
 - 응시연령: 18세 이상(2006. 12. 31. 이전 출생자)

▶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▶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▶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□ **직무분야별 응시자격**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응시자격요건
전문위원 (5급 상당)	<p>◎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.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.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5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

- ※ 관련분야 학위: 행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포함 등 일반 행정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
-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: 지방행정(의회·법제 등 실무경력), 지방자치 등
- ※ 경력인정 범위: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,
정부투자기관,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, 법률에 의해 설립된
공사·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
- 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- ※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3.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

□ 보수 및 수당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□ 근무조건

- 근무시간: 주40시간, 1일 8시간 근무(월~금)
- 근무조건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
4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원서접수	1차 서류심사 합격자발표	2차 면접심사	면접전형 합격자발표	임용예정일
24. 12. 3.(화) ~ 12. 6.(금) (4일간)	24. 12. 11.(수)	24. 12. 17.(화)	24. 12. 19.(목)	25. 1. 1.(수)

- ※ 서류합격자 면접 심사 일시 및 장소는 합격자 개별통보 및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시험방법

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임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
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
- 평정항목(5개 항목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)

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-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○ 합격자 결정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- *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 또는
- *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
- *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
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5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12. 3.(화)~ 12. 6.(금) 평일 09:00~18:00
 - ※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접 수 처 : 성동구의회 사무국 의정팀(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, 1층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등기우편(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)
 - ※ 우편접수시 응시 수수료 **현금 동봉(10,000원)** ※ 통상환증서 불가
 - ※ FAX, 이메일, 대리접수 불가

6. 제출서류

-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1호 서식) 1부
- 응시원서(별지2호 서식) 1부
 - 응시수수료: 수입증지 인증(5급상당 10,000원)
 - 응시수수료를 미납한 응시원서는 무효처리
 - ※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
 - ※ 응시원서 접수 당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이며, 해당 증명서 제출
 - ※ 우편접수의 경우, 응시수수료 **현금 동봉(10,000원)**
- 이력서(별지3호 서식) 1부
 -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, 경력,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(사본가능)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.
 - 재직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시 경력 미인정
- 자기소개서(별지4호 서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5호 서식) 1부

-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6, 7호 서식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8호 서식) 또는 주민등록초본
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 1부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9호 서식)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자격증 사본 1부(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,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근무기간(○년○월)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(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·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. 다만,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)
 - ※ 경력인정기간은 연, 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, 미만은 절사함
 - 회사가 폐업·파산·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
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 -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번역본 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(응시자수 미달 시에도 해당)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면접시험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, 면접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

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시험일정 변경 등에 따른 일정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음)
-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성동구 의회사무국 의정팀《02-2286-6453》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